

카리타스봉사센터 규정

제정 2019. 9. 30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속) 본 기관은 호서대학교 카리타스 봉사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하고, 호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학생처 산하기관으로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본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 사업의 총괄 계획 수립
2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
3. 호서봉사단 운영, 지원, 관리
4. 사회봉사 활동원 모집, 교육 등의 지원, 관리
5. 사회봉사 활동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
6.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홍보, 출판
7.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, 인증제 운영
8. 해외봉사 파견에 관한 사항
9.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직제와 조직) ① 센터장은 봉사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운영을 총괄하며,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 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직원(계약직 포함)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해 호서봉사단을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 (호서봉사단) ① 호서봉사단의 자격은 교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가 센터에 등록,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센터는 호서봉사단의 운영과 관련해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구성 및 운영) 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원, 교직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봉사센터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4 장 재정 및 기타

제8조 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과 타 기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운영세칙)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